

韓國企業에 있어서의 技術開發 政策과 特許制度의 漸進方案(2)



李 秀 雄

〈韓國工業所有權法學研究院 院長・辨理士〉

(4) 政府의 支援

技術開發 특히 重化學에 관한 技術開發은 施設面, 資金面 및 研究員補充등 우리나라 企業의 現 여건으로 볼때 어려운 점이 많다. 더욱 技術開發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므로 企業이 새로운 技術開發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政府에서도 技術開發을 各企業에 촉구하고 그 技術方案의 하나로 韓國産業銀行에서는 各企業에게 技術開發에 關한 資金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그러나 企業은 技術開發이 없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있는 實情이다. 參考로 現行法上 技術開發에 關한 政府支援制度를 간단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註 5).

(a) 研究所 設立을 爲한 支援

國內法人이 研究所 設立의 경우 당해 建物 및 研究施設에 소요된 投資額의 8%(國產機械取得時)에 상당하는 稅額을 法人稅에서 공제.

(b) 施設機資材에 대한 支援

投資金額의 8% 상당세액을 法人稅에서 공제 하되 공제액수는 3年間은 100%, 그 以後 2年間은 50% 이상을 상당 공제한다. 또한 減價償却額의 100/100을 稅金으로 計上

(c) 金融支援

技術開發準備金 積立使用者에게 長期低利資金 優先支援

(d) 技術開發支援

準備金の 損金認定(所得金額의 20% 範圍內에서 損準認定) 特別償却(研究 및 試驗用施設에 대해 처음 1回 取得價額 50%를 特別償却·新技術 企業化資金支援·國產新技術保護技術訓練)

(e) 技術訓練

職業訓練分擔金 損費認定·事業體附設學校運 營費 損費認定·訓練用土地·建物에 대한 諸稅 免除.

(5) 組織的 技術開發과 尖端技術開發

發明은 個人的 創意力에 바탕을 두지만 技術開發의 促進을 위해서는 組織的研究開發이 必要하다. 發明이 特許出願되고 그것이 심사를 통과하여 特許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의 성과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現 實 正이다. 이의 한 예로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特許廳에 特許出願되어 特許되는 件數는 80%이상을 外國人이 점하고 있으며 이들 출원인은 거의가 企業體임을 알 수 있다.

이에 反하여 內國人的 特許出願人중에는 企業보다도 個人出願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內國人的 特許出願內容이 일반적으로 技術水準이 높지 않은 것으로 評價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組織的인 研究開發의 뒷바침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80年代에 들어서고부터 컴퓨터, 遺傳工學, 半

導體, 로봇 등 소위 尖端技術開發에 各國마다 열을 올리고 있다. 尖端技術開發의 重要性에 대해서는 1984년 9월 25日 月刊 發明特許에 게재된 特許廳 朴弘植 次長의 論文 一部를 소개한다.

「資源小國에서 經濟摩擦을 일으키지 않고 80~90年代를 살아가기 爲해서는 尖端技術을 主體로 한 技術入國 路線이어야 한다. 켈리텔레비전과 自動車(技術集約度 II 順位)는 日本의 경우 60%를 輸出하기 때문에 世界 各地에서 經濟摩擦을 일으키고 있지만 全生産量의 90%를 輸出하고 있는 VTR은 摩擦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이것은 日本이 世界에서 처음으로 VTR을 開發하였기 때문에 世界 各國에서는 日本企業에 對抗할만한 VTR企業도 그의 雇傭市場도 아직은 形成되지 못하여 摩擦을 빚지 않고 있다.

조만간 歐美에 VTR 工場이 出現하여 雇傭市場이 形成된다면 VTR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그때는 먼저 내놓은 것처럼 새로운 技術製品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技術立國의 樣相인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企業의 自生力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尖端技術開發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企業人的 認識提高

우리나라의 技術發展과 特許制度가 先進諸國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발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技術과 特許制度에 대한 企業家와 經營人的 認識不足에 있다.

企業家나 經營人중에는 아직까지도 特許가 무엇인지 實用新案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조건 外國의 機械나 製品을 수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現實情인 것 같다.

一般職員이나 從業員이 각고끝에 창작하고 착안한 發明이나 考案品을 그대로 死藏해 버리기 때문에 남에게 빼앗기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며 이 귀중한 發明品이나 考案品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特許制度가 있는지 모르

고 있기 때문이며 설사 알고 있다 해도 特許出願에서 特許權 획득시까지의 費用때문에 自己의 權利化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出願에서 權利獲得까지의 費用은 전부 합산해야 얼마되지 않는데도 비용때문에 特許出願을 포기하고 있다가 他人이 먼저 出願하므로서 귀중한 發明品을 빼앗기고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함) 오히려 남에게 特許權을 侵害하였다고 해서 警告狀을 받고 심지어는 損害賠償은 물론 人身拘束까지 당하는 사례를 新聞紙上을 통해 눈누히 보아왔다.

이 모든 原因은 企業家나 經營人이 特許에 대해서 너무 인식하지 못한데 있으며 또 직원들의 建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

企業家나 經營人들의 認識不足도 문제이나 職員이나 從業員의 認識不足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上司에게 建의하지 않는 자세도 문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先進國 대열에 들어서고 輸出國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 技術과 特許制度를 발전시키는 것만이 最上策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企業家나 經營人은 職員이나 從業員으로 하여금 發明이나 考案을 하도록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3. 職務發明制度의 活用

職務發明(考案)이라 함은 企業의 從業員이나 任員 또는 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發明(考案)한 것이 성질상 使用者·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從業員등의 現在 또는 過去의 任務에 속하는 發明을 말한다(特許法 17조)

이 職務發明制度를 特許法 實用新案法 등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은 從業員 또는 任員의 發明意慾을 고취시켜 좋은 製品을 生産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制度는 現在 몇개의 企業에서 이를 活用하고 있다.

企業은 좋은 製品을 製造販賣하기 위하여 從業

員으로 하여금 開發하게끔 物心兩面으로 뒷바침 하여 주어야 한다. 從業員이 한 發明에 대해서는 일정한 補償金을 주고 特別우대하여 계속 研究開發하도록 企業에서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先進諸國의 企業에서는 各 企業마다 從業員의 發明 意慾을 고취하기 위해서 莫大한 開發費를 投資하고 있고 또한 補償金制度를 設置運營하고 있으며 從業員에게 支給되는 發明補償金만해도 엄청난 額數에 달한다고 한다(註 6).

우리나라의 企業에서도 최근 몇개의 企業에서 職務發明 補償規程을 마련하여 運用하고 있으나 從業員에게 支給되는 보상금이 外國에 비해 너무 貧弱하다. 우리나라 企業의 職務發明에 대한 補償金은 불과 10萬원 미만에 지나지 않아 이를 外國의 水準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재조정하여 從業員의 發明意慾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 從業員이나 職員이 創作한 發明은 從業員이나 任員의 이름으로 權利設定하고 企業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從業員들에게 實施의 對價로 實施料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企業에서는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또 職員이나 任員이 한 發明을 社長을 發明者로 하여 출원하는 것이 몇몇 企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며 이러한 현상은 社長과 從業員間의 從屬關係가 심하다는 意味 다시말하면 發明者가 社長에게 미움을 살까봐 두려워서 自己의 權利를 주장하지 못한데 있고 또한 發明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풍토의 일환이기도 하다.

國際事務局인 WIPO 規定 第506條에는 「企業이 技術改善을 이용하거나 이를 第三者에게 제공 하는 데는 당해 技術創作者 또는 技術改善者는 補償을 取得할 權利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創作者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선진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職務發明制度를 잘 活用하고 있으며 日本도 特許大國답게 職務發明制度를 定着시켜 技術開發을 적극 장려한 결과 오늘날에 있어서 技術大國을 이루게 된 것이다.

4. 企業의 研究所設置 및 外部 研究機關活用

(1) 企業의 研究所設置

企業이 工業所有權을 制度的으로 發展促進시키기 위해서는 技術을 開發할 수 있는 研究所를 設置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年間 輸出額이 200億弗이상 된 時點에서는 우리의 企業이 國內競爭에서 탈피하여 國際競爭單位로 成長하여야 하기 때문에 製品의 質的 向上과 高級化를 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技術水準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技術開發의 本産인 研究所를 設置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몇개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企業들이 研究所를 設置하지 않고 단순히 開發部 또는 技術部를 設置하여 技術開發業務를 擔當하고 있다.

自體 研究所를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는 企業도 研究施設의 未備, 研究員의 不足, 研究所 運營費의 不足 및 經營人의 研究所에 대한 認識不足으로 적극적인 研究活動을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技術開發促進法의 制定施行으로 研究開發資本의 支援, 技術開發品에 대한 稅制減免 및 金融上의 혜택, 제미나 開催 등으로 技術開發에 대한 認識이 점차 증대하고 이에 따라 研究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企業이 研究所를 設置·運營하기 爲해서는 莫大한 資金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企業이 研究所 設置를 하기 위한 基本 對策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研究所內의 研究用 機資材 輸入의 圓滑化를 위해 關稅減免 및 通關절차의 간소화
- ② 研究所 設置에 따른 金融支援의 擴大
- ③ 研究員 養成 및 海外 科學者 유치
- ④ 研究所 設立敷地選定時 政府의 制限措置 해제
- ⑤ 經營主의 勇斷 등이다.

(2) 企業의 外部研究機關 活用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大部分의

企業은 自體內의 研究所를 設置運營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득이 外部研究機關을 活用할 必要가 있다.

外部研究機關으로 代表的인 것은 韓國科學技術院과 韓國化學研究所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세계 굴지의 科學技術研究所 못지 않게 研究所施設·研究員 및 技術文獻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를 活用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企業이 自體內에 研究所가 없거나 研究施設의 未備등의 이유로 技術開發이 어려운 때는 上記 研究機關에 依賴하여 개발할 수 있다. 用役費가 엄청나게 비싸움이 있기는 하나 長期的인 眼目에서 볼 때 이를 積極 活用하여 製品의 高級化를 기하여야 하고 또 이렇게 하여 開發한 製品은 반드시 特許등을 出願하여 權利設定해서 他企業이 이를 모방 侵害하지 못하도록 對策을 강구해야 한다.

5. 特許管理部署 設置

우리나라는 特許出願件數의 貧弱으로 企業內에 特許등을 전담할 特許管理部署가 상존해 있는 기업이 몇개 되지 않으며 있는 경우도 활동이 미약하다. 따라서 기업은 特許管理部署를 설치하여 경쟁기업의 技術開發動態를 파악하고 輸出擔當部署와 연계시켜 새로운 開發品에 대해서 特許權化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特許管理 部署의 活動은 技術開發 製品開發의 進行과 항시 병행하여 製品設計가 완료되었을 즈음에 他社製品 및 外國特許權과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特許權化하고 先手管理를 하여 개발한 제품의 원활 生産販賣活動을 遂行해 나가야 할 것이다(註 7).

6. 從業員의 特許制度 研究 및 外國 特許制度 視察

(1) 從業員의 特許制度 研修

우리나라의 特許制度를 정착시키고 發展시키기 위해 政府의 강력한 支援아래 設立한 團體로

서 韓國發明特許協會가 있다. 현재 300餘 企業體가 加入하고 있으며 會員의 特許에 關한 研修와 特許에 關한 情報를 提供해주고 特許에 關한 刊行物 發刊을 主業務로 하고 있다. 연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企業은 從業員으로 하여금 研修를 받도록 하며 特許의 活性化를 기해야 한다.

韓國發明特許協會 이외에도 特許에 關한 研修機關으로는 韓國工業所有權法學究院과 國際工業所有權研究院이 있다.

(2) 從業員의 海外研修派遣

外國의 企業은 特許部나 特許에 關한 業務部署를 社長直屬下에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은 外國의 特許制度를 視察하고 특허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케 하여 特許制度를 發展시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7. 特許에 關한 各種公報 및 刊行物 資料備置

企業은 特許에 關한 各種公報 즉 國內외의 特許公報, 特許公開公報, 商標公報 등은 말 할 것도 없고 企業의 同一似類한 業種과 연관된 刊行物(技術文獻) 등을 비치하여 特許의 動向 및 技術의 動向을 把握할 수 있다.

企業이 外國 技術의 動態나 特許의 動態를 把握하지 않으면 國內外 市場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外國의 좋은 技術이 우리나라에 特許나 實用新案을 出願하여 特許權化하면 우리의 企業은 이를 實施할 수 없고 꼭 實施해야만 될 경우 비싼 로열티를 支給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外部의 技術文獻 센터로 産業研究院이 있다. 이 연구원은 國內외의 技術에 關한 刊行物은 물론 國內外特許에 關한 各種 公報를 備置하고 있다. 最近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企業의 從業員이 增加하고 있으며 열람비도 廉價이다.

8. 全國民의 發明家化와 發明者에게 各種特惠 부여

(1) 全國民의 發明家化

全國民을 發明家化하는 홍보활동은 韓國發明特許協會가 主管하여 行하고 있으나, 이는 主로 協會에 加入한 會員을 主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거국적으로 行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次元에서 行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 方案으로 初·中·高敎科에 發明 思想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수록하고 發明者에게 주어지는 惠擇에 대해 法的制度를 제시하거나 外國의 實例를 들어가며 學生들에게 주입시켜 나가면 좋을 것이다. 또 政府는 國營 또는 民間 매스콤 특히 TV·라디오를 통한 發明思想을 고취하여 全國民의 發明家化에 힘써야 한다.

現在 發明家を 위한 날로써 科學의 날(4월 23일)과 發明의 날(5월 19日)이 있고 그 외에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 實施하고 있는 것으로 初中生의 우수 發明者에게 시상하는 제도가 있다.

9. 高等學校 및 大學校에서의 正規講議 實施

發明이나 考案을 할 수 있는 적령은 高等學校 이상의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最少한 高等學校·專門학교 및 大學에서 正規過程으로 講議를 실시함으로써 發明의 基本이 되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를 기할 수 있다.

대학에서 國家百年大計에 없어서는 아니될 技術書의 基本書인 特許에 대한 강의가 없는 것은 文教政策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식 부족인 것 같다. 政府는 技術人口의 확대를 위해서 文教政策을 재검토하고 特許·實用新案·意匠 및 商標에 관한 강의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10. 海外 特許의 管理

새로운 發明品이나 考案品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外國에까지 특허를 출원하여 보호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우리의 상품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外國企業이 이를 모방하거나 自己의 이름으로 特許權등을 취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商品을 美國이나 其他 外國에 輸出하기 위해 선적하였으나 相對國의 特許權이나 商標權에 저촉되어 輸出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因한 損害倍償까지 支給해야 했던 일도 있다.

따라서 企業은 商品을 外國에 輸出하기 前에 相對國의 特許制度를 調査하여 輸出할 商品이 그나라 特許法에 저촉되는지 調査한 다음에 輸出해야 한다. 美國등 先進諸國은 特許制度가 잘 發達되었기 때문에 外國製品을 모방하여 輸出한다면 우를 自招하는 결과가 되니 海外에서의 特許·實用新案을 철저히 管理할 필요가 있다.

結 論

현 企業이 당면하고 있는 技術開發政策과 特許制度의 漸進方案에 대하여 筆者가 以上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企業은 自生力을 배양하여 보다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技術開發政策을 수립 이를 特許權과 연계시켜 國內企業間은 물론 國際競爭力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특히 世界先進國이 앞다투어 半導體·遺傳工學등 世界最尖端技術開發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 우리 企業이 구태 의연한 思考方式과 낙후된 技術만으로 우리의 技術水準을 國際經濟單位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웃 日本企業이 世界尖端技術을 韓國이나 대만등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一言하여 日本이 全世界市場을 장악하여 여타 國家로부터 도전받는 貿易戰爭을 막아보자는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技術開發政策을 再定 立遂行해 나가야 한다. 또한 外國의 技術開發動向 및 特許動向을 항시 수검검색하여 自社技術파트와 特許파트에 이를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제공받은 部署에서는 다시 이를 면밀히 研究分析하여 自社研究開發品과 特許出願된 製品과 중복되는지의 여부 등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

技術開發은 企業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므로 政

府의 강력한 支援과 企業家의 技術에 대한 확고 부동한 精神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企業이 살길은 오직 더욱 심화되어 가는 國際技術開發戰爭에 여하히 대처해 나가느냐에 企業의 運命이 달려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參考文獻 ◎

註 1 : 國會議員 李相義 著 「國際競爭力에서 본 工業所有權과 産業政策」
 註 2 : 金永佑 著 「民間企業의 技術開發促進方案」 特協 1981.2.11

註 3 : 森谷正規 「尖端技術의 動向과 韓國의 對應에 關한 論文」
 註 4 : 崔春彥 「國際技術交流와 特許情報管理」 特協誌 1980년 7월호
 註 5 : 金應貨 「民間研究所 設立課題와 對策」 特協誌 1979. 4年號
 註 6 : 大仲康義 「特許 얻는 方法」 日刊工業新聞社, 昭和 54.11.10
 註 7 : 吳相世 「企業의 新技術開發과 特許管理」 特協誌 1977년 10월호 ☞

◇ (案) 「특허·실용신안색인집」 (內) ◇
발간에 따른 수요측정

본회는 지난 1948년부터 1978년까지의 특허·실용신안 색인집 발간에 이어 1979년부터 1983년까지 5년간의 특허·실용신안 공고분에 대한 출원인별, 분류별(IPC), 공고번호별 색인집을 다음과 같이 발간코자 하오니 필요량을 기입하셔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체 제 : 국배판
 지 질 : 표지 하드카바, 내지 모조 80g
 인 쇄 : 표지 금박인쇄, 내지 청타 8p 마스타

예상면수 : 1,620면 (1권당 540면)

1면당 수록건수 : 45건 기준

총수록건수 : 24,188건

발간물종류 : 특허 실용신안공고번호별색인 (1979년~1983년)

// 출원인별색인 (//)

// 분류별(IPC)색인(//)

가 격 : 1질당(3권) 70,000~80,000원

(단, 가격은 수요측정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연 락 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조사부

(13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중앙중도빌딩 7층)